

-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-
「광주광역시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사업」

1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천 예방체계 구축 지원
- (사업기간) ~ 2026. 12. 31.
- (운영기관) (사)광주경영자총협회
- (지원대상) 광주 소재 5~19인 제조업 및 1억 미만 건설현장
- (지원규모) 총 300개소 (제조업 200개소 / 건설업 100개소)

2 지원내용

① (제조업) 5~19인 제조 안전 길잡이 구축

- 지원내용

구분	내용	비고
직관적 보조 인프라 보급	· 픽토그램 중심 다국어 경고판 및 바닥 유도선 시공 · 반사경 및 충돌 방지대 등 물리적 보조 인프라 구축 · 공장별 소모성 필수 보호구 및 화재 예방 물품 지원	현장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지원
현장 컨설팅	· 구축 환경을 활용한 지적 확인 TBM 실무 지도 · 근로자(외국인 포함) 맞춤형 현장 실습(OJT) 코칭	전담 전문가 매칭 및 행동 기반 밀착 지도
안전보건교육	· 실무 중심 맞춤형 안전보건 집체교육	제조업 지원 선정 사업장 필수 참여

－ 지원수준 : 1개소당 최대 150만 원

지원 분야	주요 지원 품목 예시 (안)	비 고
안전물품 패키지	· (개인 보호 및 보건) 공정별 필수 소모성 보호구(절단/베임 방지 장갑, 정전기 방지복, 보안경, 폭염/혹한 대비 쿨링/발열 조끼) 및 초기 대피용 방연 마스크 등 · (작업자 인지 강화) 외국인·고령자 맞춤형 직관적 안내 용품 (작업자 혈액형/국적 식별 작업복 부착용 패치, 시인성 강화 조끼) 등 · (초기 화재 대응) 간이 소화기, 화기 작업(용접 등)용 방화담요 (방염포) 등	60만원
안전설비 및 시각화 구축	· (직관적 물리 방호 장치) 지게차 동선 사각지대 해소용 반사경 (볼록거울), 충돌 방지용 모서리 보호대(쿠션), 위험 기계 접근 차단용 접이식 안전 펜스(자바라) 등 보조 인프라 · (표준 시각화 시공) 지게차-보행자 통행로 분리형 고내구성 바닥 유도선(테이프/도색), 설비별 다국어 픽토그램 현판, 위험 구역 경보 LED 표지판, 다국어 화재 예방·대피 포스터 및 야광(형광) 대피로 유도선 등	90만원

※ 사업장별 현장 진단 결과 반영하여 지원 품목 변동 가능

② (건설업) 1억 미만 건설 안전 기동대 운영

－ 지원내용

구분	내용	비고
현장 방호 및 필수 물품 지원	· 이동식 가드레일, 팝업형 라바콘 등 임시 방호 시설물 즉각 전개 · 안전모, 안전대 등 필수 생명 보호구 보급 · 간이 소화기, 방화담요 등 초기 화재 진압 장비 지급	현장 방문 진단과 동시에 시설물 및 물품 즉각 전개
현장 기술지도	· 추락·화재 등 핵심 위험 요인 원포인트 기술지도 및 신속 조치 · 당일 공정 맞춤형 TBM 실습 코칭 및 보호구 실착용 지도	기동대 불시/예약 방문을 통한 당일 공정 맞춤형 지도

－ 지원수준 : 1개소당 최대 65만 원

지원 분야	주요 지원 품목 예시 (안)	비 고
현장 방호 및 통제물품	· (추락/접근 차단) 이동식 가드레일(웬스), A형 입간판, 안전 로프 및 케이블, 원터치 팝업 안전콘, 통제 테이프 등 · (전도 방지) 이동형 LED 작업등, 고강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 · (화재 예방) 접이식 용접 방화담요(방염포), 에어로졸/투척식 간이 소화기 세트 등	40만원
안전보호구 지급	· (신체 보호) KS인증 안전모, 안전대 · (식별/신호) 고시인성 조끼(신호수/작업자 구분), 호각, 유도봉 · (계절 용품) 쿨토시/넥워머(혹서·혹한기), 방진 마스크	25만원

3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(신청기간) ~ 2026. 12. 31.(예산 소진 시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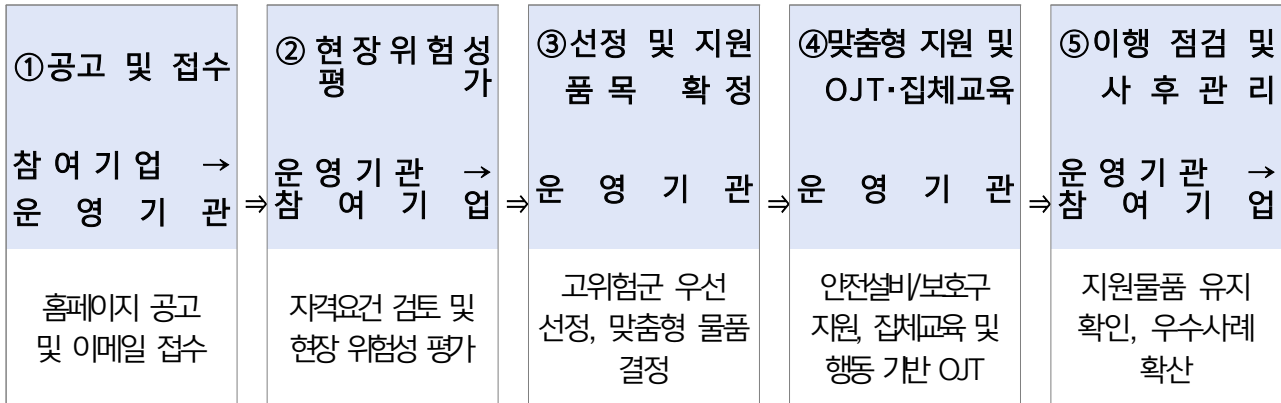
□ (신청방법) 이메일(root@gjef.or.kr) 접수

□ (문 의 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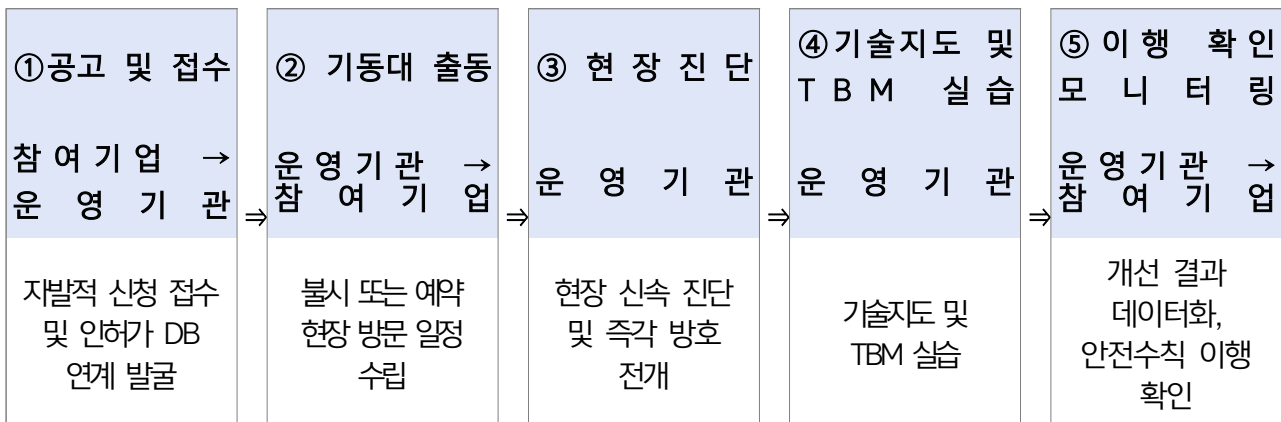
기관명	연락처	이메일
(사)광주경영자총협회 일자리사업본부	(062)608-9962	root@gjef.or.kr

① 추진절차

□ (제조업) 5~19인 제조 안전 길잡이 구축



□ (건설업) 1억 미만 건설 안전 기동대 운영



② 지원 제외 대상

-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
-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
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-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 - 기타 운영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유의사항

- ☐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
- 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☐ 기업 정보, 사업 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
- ☐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청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·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☐ 제조업 선정 기업은 안전 설비의 효과적인 활용과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‘맞춤형 안전보건 집체교육’에 필수 참여해야 함
- ☐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